

2024 현대건설

부당내부거래 예방 가이드라인 (부문별 편람)



[도입 배경 · 목적]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계열회사 간 상당히 유리한 거래를 함으로써, 타 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경쟁을 저해하고 대기업에 과도한 경제력을 집중시키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21.12.30. 附 시행) 등을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한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열회사 간 거래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경우 규제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사항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열회사와의 거래 시 이를 염두에 두고 정당한 근거와 필요에 의한 계약 체결이라는 점과 계열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와 거래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인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정위나 검찰 등의 조사를 통해 부당내부거래를 한 사실이 인정되면 회사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같은 행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며 회사와 특수관계인, 행위에 가담한 임직원은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내부거래로 인한 법 위반 리스크가 매우 중대하므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자율적으로 주의하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컴플라이언스팀에서는 「부당내부거래 예방 가이드라인」을 제작함으로써 전사 임직원 분들이 업무 수행 중에 부당지원행위 또는 사익편취 행위로 문제되는 경우가 없도록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가이드라인은 임직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 드리는 자료입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업무 편람」과 함께 숙지 당부 드립니다.

[작성 및 개정]

본 문서의 작성 및 개정은 컴플라이언스팀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컴플라이언스팀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 임직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본 문서의 작성 및 개정 이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22. 07. 08. 최초 작성
2. 2023. 07. 10. 1차 개정
3. 2024. 12. 02. 2차 개정

Contents

부당내부거래 예방 가이드라인

Part 01 부당내부거래 규제 개요	
1.1 규제의 목적	3
1.2 규제의 개요	3
Part 02 부당내부거래 규제 유형	
2.1 부당지원행위	4
2.2 사익편취행위	6
Part 03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및 영향	
3.1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파생 리스크	7
3.2 제재 사례	8
Part 04 거래단계별 유의사항	
4.1 거래개시	10
4.2 계약체결	10
4.3 계약조건 결정	11
4.4 사후 모니터링	11
Part 05 계열사와의 거래 시 유의사항	
5.1 행동원칙	12
5.2 체크리스트	13

Part 01 부당내부거래 규제 개요

1.1 규제의 목적

✓ 대규모기업집단의 절대적 비중 및 영향력

- 한국 대기업집단의 경제적 영향력
- 일감몰아주기 등 부정적 측면 존재

✓ “부당내부거래”의 문제점

- 비효율적인 계열사의 시장 퇴출 방해
- 가능성 있는 우량 경쟁사업자(중소기업 등)가 시장에서 부당 축출 및 위축
- 지원 주체가 되는 우량 계열회사 동반 부실화
-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시 경제력집중 현상 심화 우려

⇒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도모 및 경제력 집중 현상 개선

1.2 규제의 개요

✓ 내부거래는 원칙적으로는 허용

✓ 단, 계열회사 등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및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 행위는 금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부과

2.1 부당지원행위

✓ 규 정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45조 제9호
규제내용	다른 회사를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사업자 - 제한 없음
지원객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계열 관계가 요건은 아님)
행위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회사를 매개로 한 거래 (통행세 거래)
부당성 판단	지원 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 행위 유형

유 형	내 용
대가형 지원행위	자금, 자산, 상품·용역 또는 인력을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 하여 지원 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규모형 지원행위	자금, 자산, 상품·용역 또는 인력을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 하여 지원 객체에게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통행세형 지원행위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① 거래상 실질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지원 객체를 거쳐서 거래 하거나 ② 거래상 역할에 비하여 과도한 대가를 지급 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 제공

2.1 부당지원행위

✓ 지원행위 요건

- 지원 주체가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가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반대급부보다 높아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상당한 규모)

⇒ 적정성 판단 기준 : **정상가격 (유사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 형성되었을 가격)**

예) · 부동산 거래 (부동산을 시가에 비해 저가로 계열사에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

- 무체재산권 무상양도 (기술 등 연구개발 결과를 무상양도하여 계열사가 특허출원)
- 지연이자 미수령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지연이자 미수령)
- 단가 과다 적용 (계열사에 정상광고단가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여 광고비 과다 지급)

※ 안전지대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22.12.9. 개정 · 시행)

- 자금 · 자산 · 부동산 · 인력 :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30억 미만인면서
정상가격(금리)과 7% 차이 미만
- 상품 · 용역 : 거래당사자 간 해당연도 거래총액 100억 미만인면서 정상가격과 7% 차이 미만
(상당한 규모 지원행위의 경우, 거래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 부당성 요건

- 지원 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있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예) · 지원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지원 객체의 지위 강화

(중소기업들이 50% 이상 점유하던 시장에서, 지원 객체가 시장점유율 3위 이내로 진입)

-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
(지원받은 경제상 이익으로 상품/용역의 가격을 낮게 설정하여 경쟁사가 시장에서 탈락)

· 지원 객체가 지원 행위로 인하여 경쟁 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지원 행위로 지원 객체의 자금력, 기술력 등이 개선되어 경쟁사에 비해 유리해질 경우)

· 지원 행위로 인하여 지원 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2.2 사익편취(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 규 정

관련규정	공정거래법 제47조
규제내용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지
지원주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지원객체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 특수관계인이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위 계열회사가 단독으로 50% 초과 주식을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행위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가격에 비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사업기회 제공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부당성 판단	행위주체 · 객체 · 특수관계인간 관계, 행위의 목적 · 의도 및 경위, 경제적 상황, 귀속되는 이익의 규모, 기간 등을 종합하여 부당한 이익 판단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 개정 · 시행 ('23.5.22)

✓ 행위 유형

유 형	내 용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 자금 · 자산 · 상품 · 용역 등을 정상가격보다 상당히 높거나 낮은 대가로 제공 하는 행위
사업기회 제공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제공
상당한 규모의 거래	-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없이 상당한 규모로 거래 하는 행위

3.1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및 파생 리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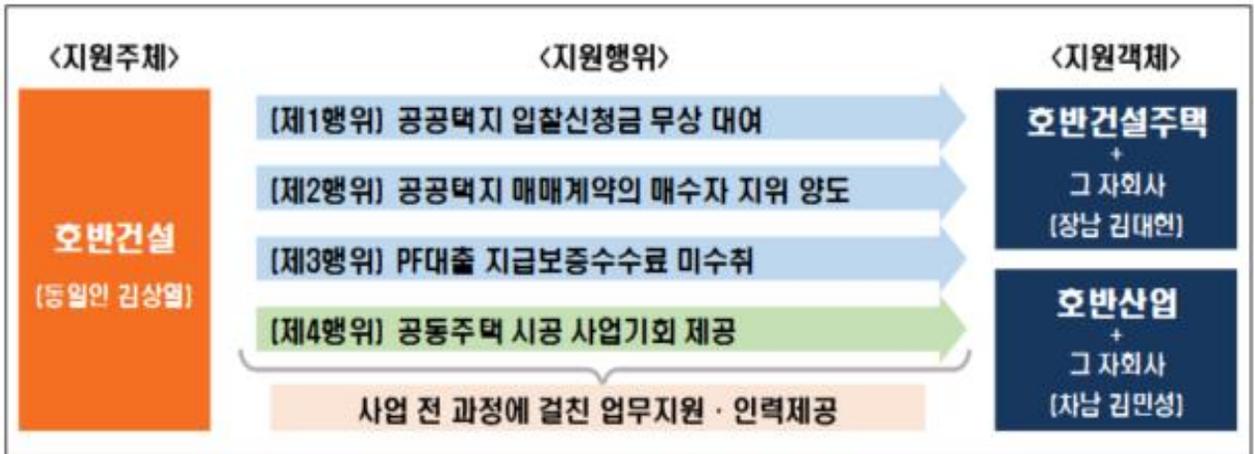
<p>시정명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지원 주체 및 객체 ▪ 당해 지원 행위의 중지 및 금지명령
<p>과징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지원 주체 및 객체 ▪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매출액의 10% 이내 ▪ 매출액이 없는 경우 40억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 개정('21.12.30. 시행)으로 2배 증가
<p>형사처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지원 주체(법인, 개인), 지시하거나 관여한 특수관계인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 고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고발 조치 - 개인 : 지시, 결재 또는 사후승인 등을 통해 위반행위의 의사 결정에 관여 혹은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실행한 자
<p>파생 리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 공정위와 과세정보 공유, 공정위 통지 등에 따라 세무 이슈(부당행위 계산부인) 발생, 일감몰아주기 과세 ▪ 검찰 : 업무상배임죄, 조세포탈죄 등 수사 가능 ▪ 법원 : 주주대표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Part 03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및 영향

3.2 제재 사례 (1)

사 례 1

(주)호반건설은 복수의 회사를 공공택지 추천 입찰에 참가시켜(소위 ‘별떼입찰’)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하여, 동일인 2세 소유의 회사들(호반건설주택, 호반산업 및 그 100% 자회사)로 몰아주는 등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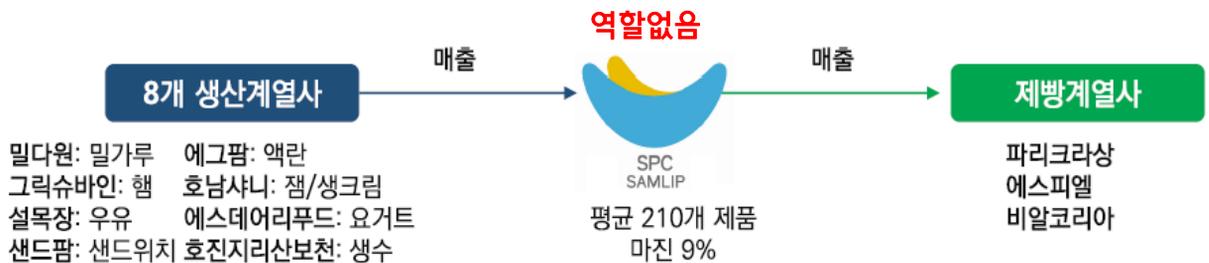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608억) 부과 ('23.6.15)

사 례 2

기업집단 에스피시(SPC) 계열회사들이 (주)SPC삼립(이하 삼립)을 장기간 부당 지원

- ① 샐리의 판매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하고, 삼립이 샐리의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
- ② 파리크라상과 샐리가 보유하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
- ③ 파리크라상, 에스피엘 및 비알코리아가 생산 계열사의 원재료/완제품을 **역할 없는 삼립을 통하여 구매 (통행세 거래)**



제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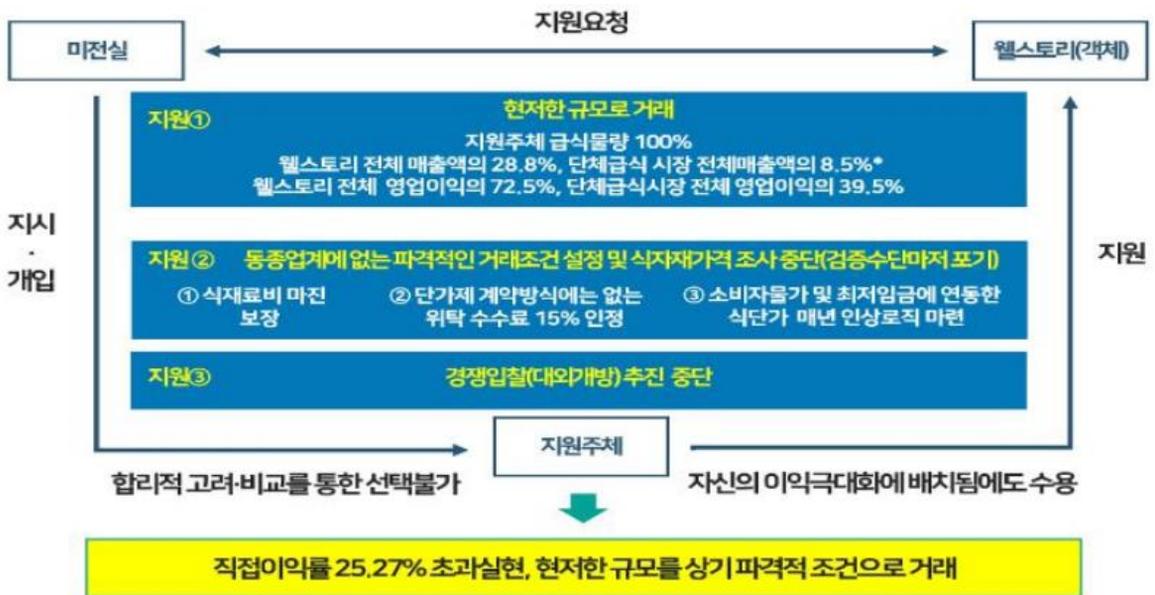
시정명령 및 과징금(647억) 부과, 고발 ('20.7.29)

Part 03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재 및 영향

3.2 제재 사례 (2)

사 례 3

삼성전자 등 4개사는 사내급식 물량 전부를 웰스토리에게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식재료비 마진 보장, 위탁수수료로 인건비의 15% 추가 지급(전기 10%), 물가·임금인상을 자동 반영 등의 계약구조 설정을 통해 웰스토리가 **고이익을 항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2,349억) 부과, 고발 ('21.6.24) * 불복소송 중

사 례 4

대림산업(주)은 총수일가 100% 자회사인 APD(주)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귀속시켜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자회사인 구(舊) 오라관광(주)이 APD와 **유리한 조건(고율의 수수료 지급)으로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게 함



제 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13억) 부과, 고발 ('19.5.2)

4.1 거래개시 (거래의 필요성 검토)

✓ 통행세 거래 해당 여부 점검

- 거래상 역할이 없거나 미미한 회사를 거래 단계에 추가하는 것은 아닌지
- 역할에 비해 과도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 위와 같은 행위들로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 사업 기회의 제공 해당 여부 점검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다른 계열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닌지
- 단, 회사가 직접 수행할 능력이 없거나, 정당한 대가 지급 등 합리적인 사유 있다면 적용 면제 가능

4.2 계약체결 (거래상대방 선정 관련 검토)

✓ 계열사 거래를 하게 된 사유의 내용적/절차적 적정성 점검

- 비계열사를 통해 수행할 경우 거래조건, 기술력,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보안 유지 등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
- 적절한 비교절차를 진행하였는지 점검 (경쟁입찰, 견적비교, 시장조사)
- 업체 선정 결정 과정 문서화 필요

✓ 수의계약의 합리적 사유 존재여부 점검

- 거래의 규모/횟수/연속성 측면에서 경쟁입찰을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등 경쟁입찰 시 회사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 관련시장 상황, 합리적인 입찰자격을 갖춘 사업자의 부족 등 유효한 경쟁입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4.3 계약조건 결정 (거래조건의 적법성 검토)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해당 여부 점검**

- 비계열회사 단가 또는 일반적 시장가격 대비 같거나 유사한 수준인지
- 거래상대방과 거래가격의 결정/변경에 관하여 실질적 협상이 있었는지 (회의록, 메일 등 근거자료 구비)

✓ **일감몰아주기 해당여부 점검**

-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는지
- 효율성/보안성/긴급성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4.4 사후모니터링 (거래지속의 적법성 검토)

✓ **거래의 합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보존**

- 수의계약 체결 및 거래 갱신 시 정당한 사유 및 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 구비

✓ **계약 갱신 시 거래 지속 필요성, 합리성, 거래조건 적정성 지속 검토**

- 계약체결 및 갱신 시 단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인건비의 변경 또는 재워탁 단가 변경 등 구체적인 단가 인상의 근거에 대한 점검
- 비계열사에 대한 이익률, 비계열사에 대한 적용가격, 업계의 평균 이익률 등을 비교하여 상당한 차이가 있는지 등을 점검
- 그간 철도분기기 시장을 독점했던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 진입방지 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으로 처분('24.5.22. 보도) → 세안의 신규 진입으로 수의계약 시보다 낙찰률 15% 이상 하락 → 갱신 시 새로운 거래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5.1 행동원칙

계열회사와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이에 앞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적정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컴플라이언스팀 또는 정책지원1팀과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유의사항

- 계열사와의 거래 시 거래개시 단계에서 거래 필요성, 계열회사 선정 이유, 계열회사의 역할이 명확한지 확인
- 계열내 거래를 하게 된 내용적/절차적 적정성 점검
 - 시장조사, 비교견적, 경쟁입찰 여부 등
- 수의계약 시 합리적 사유 여부 점검
 - 거래규모/횟수/연속성, 영업비밀 보호 필요성, 관련시장 상황, 효율성/보안성/긴급성 등의 정당화 사유
-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여부, 상당한 규모의 거래 여부 점검
- 계약갱신 시에도 주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 독점시장에 신규진입자가 있을 경우 경쟁입찰 실시

02 금지사항

- 적정한 단가 협상없이 계열회사가 제시하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수용하거나, 계열회사에 원하는 단가를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계열사와 거래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입찰 등 공정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의계약 진행
- 계열사와의 거래조건을 합리적인 설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타 비계열회사와의 거래조건과 다르게 설정

Part 05 계열사와의 거래시 유의사항

5.2 체크리스트 (1)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자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가지금금, 대여금 등 자금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였는가?
자산및상품등 지원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부당지원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회수를 지연하거나 상각하여 회수불가능 채권으로 처리하였는가? · 외상매출금, 용역대금을 약정기한 내에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회수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 이자를 받지 아니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대금을 대여하거나 용자금을 알선해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 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였는가? · 지원객체가 운영하는 광고매체에 정상광고 단가보다 높은 단가로 광고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비를 과다지급 하였는가? · 주택관리업무를 지원객체에게 위탁하면서 해당 월의 위탁수수료 지급일 보다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해당 월의 임대료 등 정산금의 입금일을 유예해주는 방법으로 지원객체로 하여금 유예된 기간만큼 정산금 운용에 따른 이자상당의 수익을 얻게 하였는가?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상품, 용역을 무상으로 또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객체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제공받았는가?
인력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에 대하여 인력을 타 사업자와의 거래조건과 비교하여 낮거나 높은 대가 또는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가?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계열회사가 부담하였는가?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 총담금 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였는가?

Part 05 계열사와의 거래시 유의사항

5.2 체크리스트 (2)

항 목	구분(법조항)	점검사항
물량몰아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 물량을 몰아주었는가? ·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에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였는가?
통행세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업자와 직접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 또는 다른 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산 및 상품 등의 부당한 이익 지원	공정거래법 제47조 (사익편취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등 자산 또는 상품·용역을 계열회사와 거래 시 비계열사의 금액 조건과 7%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는가? · 상당히 유리한 조건(할값 제공 또는 고가 매입)의 거래인가? · 회사가 직접 수행할 경우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기회를 다른 계열사에게 제공하였는가? · 합리적 고려 없이 상당한 규모의 물량을 제공하였는가? · 상당한 규모의 거래 시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의 정당한 사유를 검토하였는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와 매출 거래 시 계열사가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당사의 사업능력, 재무상태, 신용도, 기술력, 품질, 가격, 거래규모, 거래시기, 거래조건 등 해당 거래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이를 객관적·합리적으로 검토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비교·평가하였는가? · 그러한 근거자료(품의서, 계약서 등)가 있는가?

